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25.12.3.(수)]

기술형 입찰 등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방안

－ 대형공사의 적정 공사비 · 공사기간 풍토 조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은영 연구위원

CONTENTS

part

1

기술형 입찰제도
추진경과

part

2

주요 현안 분석

part

3

최근 정부대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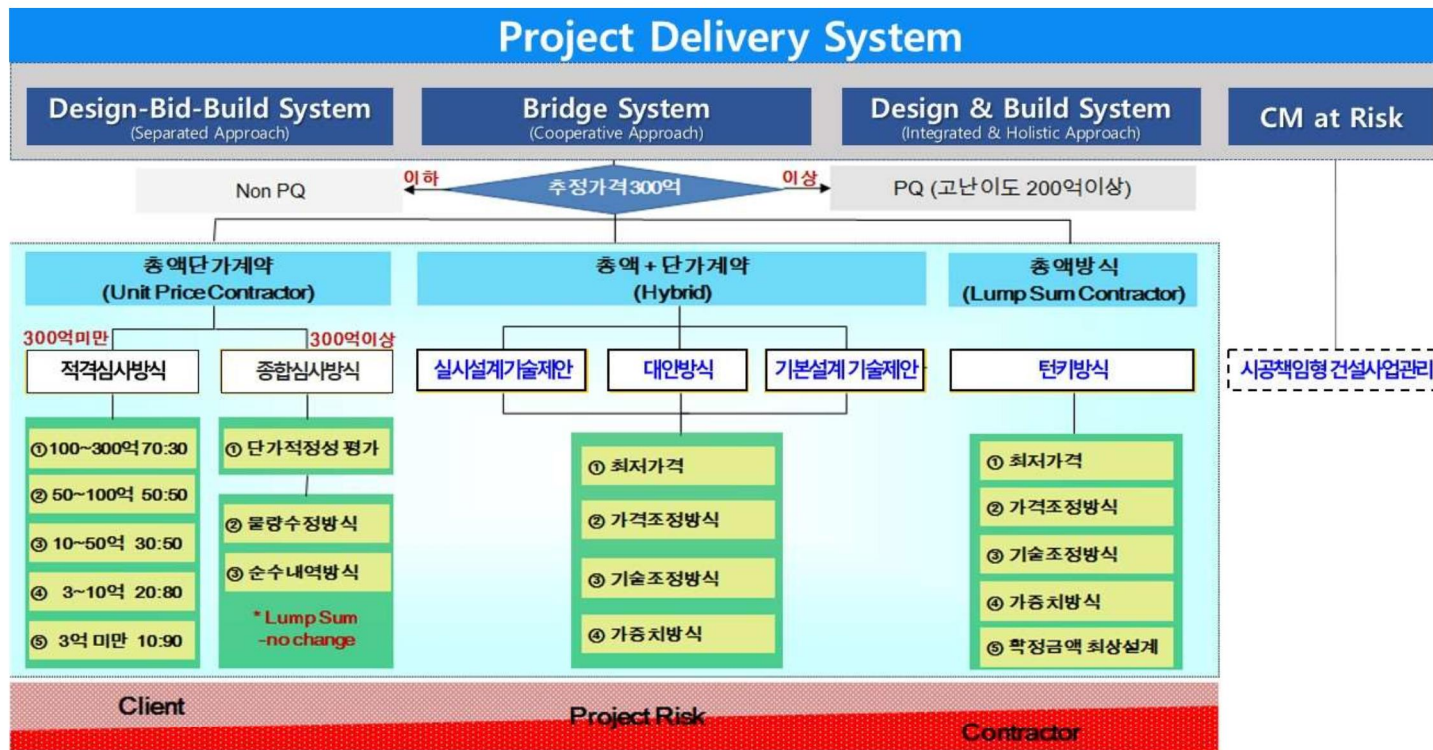
part

4

개선방안
제언

기술형 입찰제도, 국내 도입 50년

- 도입시기 : 대안입찰('75), 설계·시공일괄입찰('77), 기술제안입찰방식('07)
- 근거법령 : 대형공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75) → **국가계약법**('95)



자료 : 신은영, 2016

낙찰자결정방법 등 변화

('77. 4) 기준적합최저가

('83. 6) 가격조정최저가

('95. 7) 가중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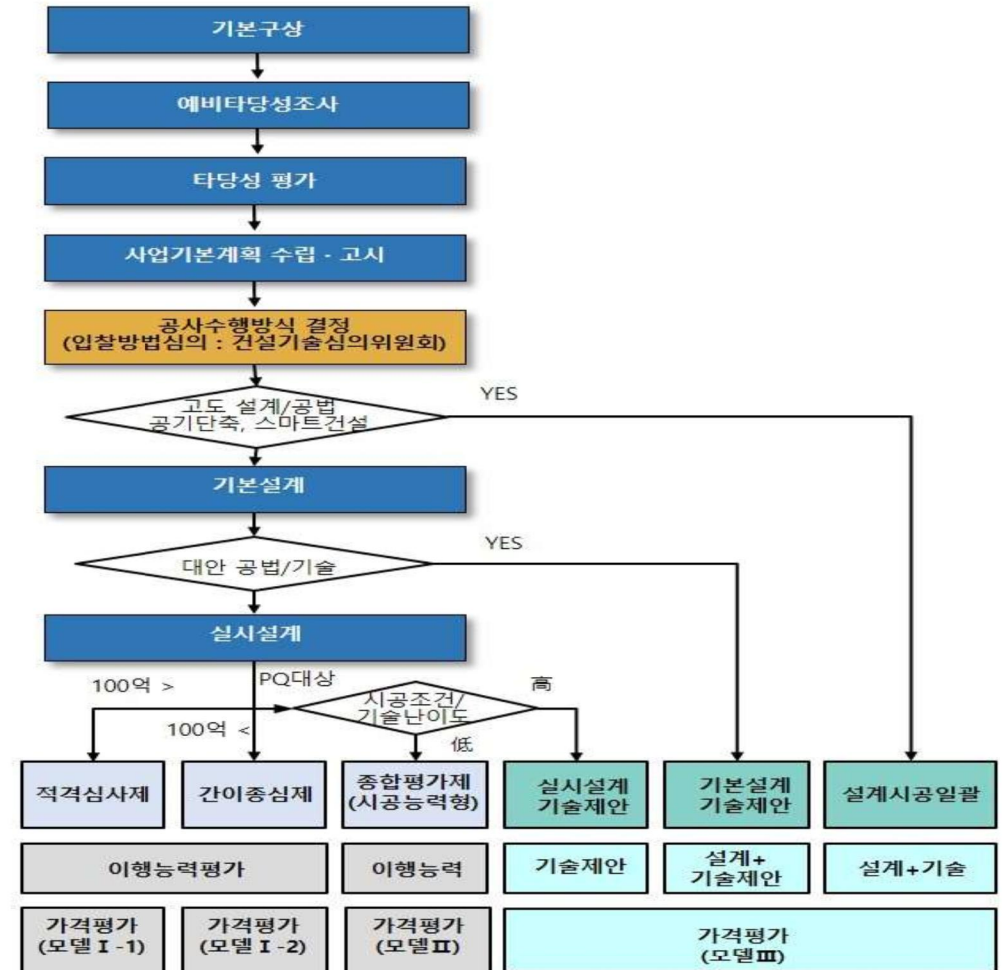
('14. 1) 설계적합최저가,
확정가격최상설계

('16. 12) 수의계약 집행기준,
설계보상비 현실화

기술형 입찰방식 결정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절차

- [발주청]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 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하여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을 결정

❖ 미국 FHWA는 특별한 승인 없이 턴키 방식(DB)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2017.8): 23 CFR Part 636 **5천만달러 (약 700억원)**



자료 : 신은영, 2013.12 일부 수정

기술형 입찰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6장 대형공사계약 : 적용대상, 정의, 입찰방법 심의 등, 입찰참가자격, 입찰절차,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설계비 보상,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평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예규)

- 제1장 총칙
-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절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 제5장 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일괄입찰등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절차: 국가계약법 적용(조달청)

-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 예비계약 부관,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 수의계약 추가특수조건, 수의계약 업무처리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 법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법 제45조(공사비 산정기준),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영 제6조, 제17조~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 영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고시)

- 적용범위, 심의절차, 심의기준, 심의, 심의결과 통보, 공고, 심의운영관리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제4장 일괄입찰·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운영
- 제5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고시)

-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공사기간 결정 절차, 공사기간 산정시 주의사항, 공사기간의 산정방법,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국가재정법·시행령

- 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 영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총사업비 관리지침(훈령)

-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 제64조(시공 단계) ②, ⑨
- 제111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훈령)

-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 규정
- 제3절 비용의 추정 : 비용추정의 기본 원칙, 비목별 총사업비 산정원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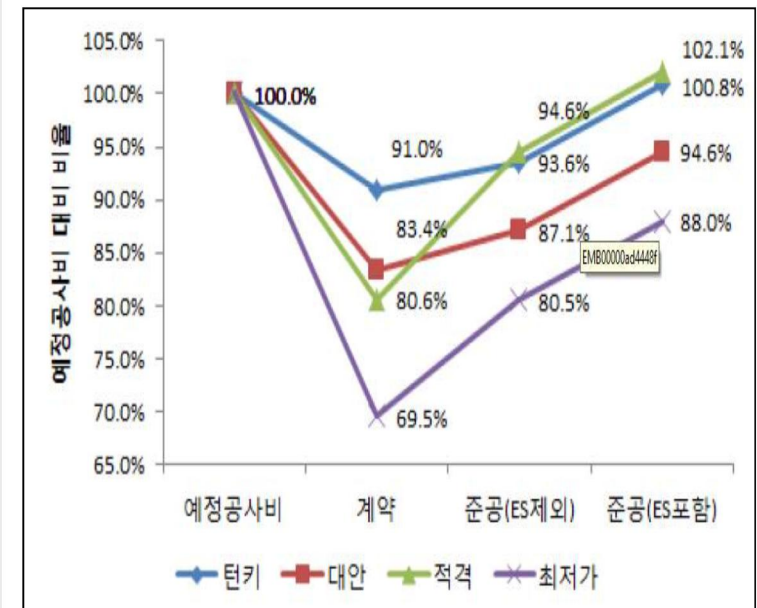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훈령)

-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기술형 입찰의 주요 현안

그간의 이슈와 제도개선은 주로 설계심의 공정성 · 투명성 · 효율성에 포커스

- 2010년 : 턴키 설계심의제도 전면 개편(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09.3)
- 2012년 :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방안(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09.3)
- 2014년 :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경제장관회의, '14.1.22)
- 2016년 :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 수의계약 근거 마련
- 2017년 : 일괄입찰공사 불공정사례 개선방안
- 2019년 : 설계심의 정원 확대 및 스마트건설 턴키 발주 근거 마련
- 2019년 :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제도 혁신방안(조달청)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12

기술형 입찰의 주요 현안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및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유찰률 급증,
이에 따른 대형 국책사업의 지연 및 사회·경제적 손실

경쟁성 확보를 위한
유찰 위험요인
해결 필요

- ✓ 사업비가 현실을 반영 못함(저가 책정, 물가반영 부족)
- ✓ 입찰 준비비·설계보상(설계대가) 부족
- ✓ 리스크·보상 불균형(불가항력, 지반, 환경 리스크)
- ✓ 참가자격·평가기준 등의 과도성(과도한 자격, 실적, 제한 등)
- ✓ 공사기간의 실행 가능성(인허가, 토지보상, 지장물 등)
- ✓ 불공정 행위(계약조건, 비용/책임전가 독소조항)
- ✓ 과도한 규제(분리발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등)
- ✓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정책변화, 정치적 이슈)

기술형 입찰 발주 현황(2018-2024)

최근 7년간 기술형 입찰 발주(국가계약법 적용) 187건 중 유효 데이터 179개 분석,
일괄입찰의 발주건수가 64.8%로 가장 많고, 기술제안입찰 31.8%, 대안 3.4%

기술형 입찰 유형별 계약건수 추이

구 분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18	10	45.5	2	9.1	4	18.2	6	27.3
2019	5	41.7	0	0	3	25.0	4	33.3
2020	17	60.7	2	7.1	7	25.0	2	7.1
2021	19	67.9	0	0	8	28.6	1	3.6
2022	25	61.0	1	2.4	6	14.6	9	22.0
2023	19	73.1	1	3.8	1	3.8	5	19.2
2024	21	95.5	0	0	0	0	1	4.5
소 계	116	64.8	6	3.4	29	16.2	28	15.6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부자료(김영현 정리), 2025.3.29.

기술형 입찰 발주 현황(2018-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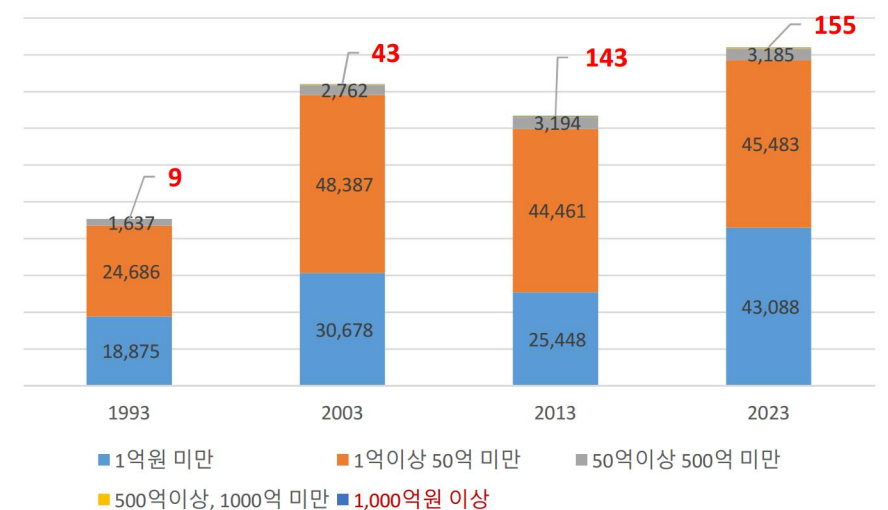
추정금액 2,000억원 이상의 발주건수가 179건 중 94건으로 52.5% 차지,
스마트터키 등의 영향으로 300억원 미만 발주건수는 13건으로 7.3% 차지

기술형 입찰 유형별규모별 계약건수 추이

구분 \ 추정금액	300억원 미만		300-1,000 억원 미만		1,000-2,000 억원 미만		2,000 억원 이상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일괄	5	4.3	17	14.7	20	17.2	74	63.8
대안	0	-	3	50.0	1	16.7	2	33.3
기본설계 기술제안	7	24.1	9	31.0	3	10.3	10	34.5
실시설계 기술제안	1	3.6	11	39.3	8	28.6	8	28.6
소 계	13	7.3	40	22.3	32	17.9	94	52.5%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부자료(김영현 정리), 2025.3.29.

공사규모별 발주건수 추이(1993-2023년)



자료 : 신은영, 2025.5.

기술형 입찰 유찰 현황(2018-2024)

전체 179개 사업 중 1회 이상 유찰된 사업의 비율은 45.8%,
일괄입찰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이후 2024년 까지 유찰 비율이 증가 추세

구 분	사업수	유찰사업 건수	유찰 비율
전 체	179	82	45.8%
2018	22	10	45.5%
2019	12	2	16.7%
2020	28	7	25.0%
2021	28	8	28.6%
2022	41	24	58.5%
2023	26	17	65.4%
2024	22	14	63.6%

구 분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수	유찰건수	%	사업수	유찰건수	%	사업수	유찰건수	%	사업수	유찰건수	%
2018	10	1	10.0	2	1	50.0	4	4	100.0	6	4	66.7
2019	5	0	0	0	0	-	3	1	33.3	4	1	25.0
2020	17	5	29.4	2	1	50.0	7	1	14.3	2	0	0
2021	19	5	26.3	0	0	-	8	3	37.5	1	0	0
2022	25	15	60.0	1	1	100.0	6	5	83.3	9	3	33.3
2023	19	10	52.6	1	1	100.0	1	1	100.0	5	5	100.0
2024	21	13	61.9	0	0	-	0	0	-	1	1	100.0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부자료(김영현 정리), 2025.3.29.

기술형 입찰 유찰 현황(2018-2024)

유찰된 사업의 평균 유찰 횟수는 1.96회(최대 6회 유찰)

평균 유찰 횟수는 일괄방식(2.14회)과 기본설계기술제안(2.20회)가 높음

구 분	유효 데이터 건수			유찰사업 건수			평균 유찰 횟수
전 체	179			82			1.96 (최소 1회 ~ 최대 6회)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10	1.50	1.71	2.38	2.00	1.53	2.29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유찰사업	평균 유찰 횟수	유찰사업	평균 유찰 횟수	유찰사업	평균 유찰 횟수	유찰사업	평균 유찰 횟수
49	2.14	4	1.50	15	2.20	14	1.21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부자료(김영현 정리), 2025.3.29.

기술형 입찰 추정공사비 책정의 비현실성 지적[감사원]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의 추정공사비가 과소 책정되어 유찰 발생.

- 유찰 후 기타공사로 전환하여 산정한 예정공사비와 비교시
철도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55.7%)와 기본계획(27.2%) 단계에서 낮게 산정된 것을 확인

최근 기술형 입찰 유찰사업의 추진단계별 공사비(물가상승분 제외)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사업명(노선)	예타/ 사적 ¹⁾ 공사비(A)	공사비(물가상승분 제외)		증가 현황			
			기본계획(B)	유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C)	예타 대비 설계 (C-A)		기본계획 대비 설계 (C-B)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일반 철도	소계	37,018	45,320	57,643	20,625	55.7	12,323	27.2
	남부내륙철도 노반	25,332	30,581	41,824	16,492	65.1	11,243	36.8
	GTX-B(재정) 노반	11,686	14,739	15,819	4,133	35.4	1,080	7.3
일반 국도	소계	15,023	16,092	20,979	5,956	39.6	4,887	30.4
	제2경춘국도	9,121	9,699	13,750 ²⁾	4,629	50.8	4,051	41.8
	고창-부안	2,707	3,095	3,315	608	22.5	220	7.1
	비금-암태	3,195	3,298	3,914	719	22.5	616	18.7

주: 1. 예타: 예비타당성조사, 사적: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예타 면제사업)

2. 기본계획 대비 일부 사업노선 변경에 따른 증가액 980억여 원 포함

3. 사업별 공종 비율 차이 및 적용 공법 차이 등에 따라 증가비율 차이 발생

- 남부내륙철도 노반은 복합 공종(토공·교량·터널) 및 일반 터널발파(NATM) 공법을 적용한 반면, GTX-B(재정)는 대부분 터널 공종에 일반 터널발파(NATM) 공법 외 특수 기계 굴착공법(TBM)을 혼합 적용
- 제2경춘국도는 복합 공종 및 일반교량 공법을 적용한 반면, 고창-부안 및 비금-암태는 대부분 교량 공종에

자료 :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결과, 2025.6.19.

기술형 입찰 추정공사비 책정의 비현실성 지적[감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훈령): 비용추정은 가장 현실적으로 하도록 규정
총사업비관리지침(훈령):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 공종·금액 누락, 과소계상 금지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KDI)은 2013년 기준단가에 물가상승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만 반영하여 공사비 산출

공개내용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결과, 2025.6.19.)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로·철도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추정하는 공사비가 실제 설계 공사비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물가상승분 외 개정된 국가계약법령 및 설계기준 등이 추정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있는 도로·철도 건설사업 공종의 단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 미국 GAO는 오래전에 만든 기준연도 단가를 지수(cost index)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신뢰할 수 없는 비용추정으로 규정

최근 정부대책 분석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관계부처 합동, 2025.8.14.)

[2] 공공공사 유찰·지연방지

□ **(예타제도 개선) 예타대상 기준 완화 및 지방 성장 우대 추진**

- **(예타기준 완화)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국가재정법 개정)
 - * 예타 대상기준(총사업비/국비) (현행) 500/300억원 → (개선) 1,000/500억원
- **(지방우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 개편** 추진('25. 上)
 - *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지속 확대(0→30~40%)하고, '19.4월 수도권 비수도권 평가체계 이원화를 기 추진

□ **(사업구상~계약단계) 공사 유찰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

※ 사업추진단계: 사업구상 → '예타' → '기본계획수립' → '기본설시설계' → '발주입찰' → '시공'

- **(사업구상~예타단계) 총사업비 규모 산정시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을 재정비**
 -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도로 철도 비유부분) 개정
 - 일반철도국도: '25년 하반기, 고속도로: '26년 상반기 완료 계획
 - 사업구상 단계와 예타조사 학수 시점 간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물가기준 개선
 -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통괄지침: (현행) 원칙적으로 24%GDP 디플레이터 적용 → (개선) 25%GDP 디플레이터 적용하되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4% 초과시 평균값 적용

○ **(발주·입찰단계)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 확대**('23.5개→'25.569개)

- * 공사비 영향력이 높은 공종(사출콘크리트, 몰탈)을 선정하여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

- 지방계약에서도 「국가계약예규」에 준하여 기술형 입찰에서 입찰 안내서 사전공개 의무화 및 사전설명회 개최하여 준비기간 부여

○ **(낙찰단계)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상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추진(+2%p 수준)**

- *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95점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 다만, 낙찰하한율(입찰가/예정가)이 존재하여, 다수업체가 가격을 낮춰 낙찰하한율에 도달

□ **(시공단계) 총사업비 조정 자율성 확대 및 공백기간 간접비 보상**

- **(총사업비 자율조정)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 검토** → 안내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추진
 - *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시공단계 설계변경 항목(지반여건 등)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현의를 생략하고, 주무부처 협의에 조정하도록 허용
 - * 공공시장용 이설비 등 총사업비 과다 증액 우려가 낮은 사항 중심
- **(간접비보상)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책임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에 지출한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비용을 보상토록 제도개선**
 - * 장기계속공사의 공백기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국가계약법 개정)

<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 사례 >

The diagram illustrates the impact of delays in public works on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and costs. It shows a sequence of events: '현행' (Current) vs '개선' (Improvement). In the current scenario, public works are delayed, leading to a longer total period and higher costs. In the improved scenario, public works are completed on time, leading to a shorter total period and lower costs.

- **공사비 현실화 대책은 가장 근본적 대책으로 이행 중요**
- **행정·예산심사·정책제약 등 실무적 한계 우려**

(2)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기재부	'26. 上
■ 예타조사 총사업비 산정 단계 적용 물가기준 개선	기재부	'25. 下
■ 표준시장단가 주요 관리공종 확대	국토부	'25. 下
■ 지방계약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	행안부	'25. 上
■ 중소기업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추진	기재부	'25. 下
■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검토(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기재부	'25. 下
■ 장기계속공사 공백기간 간접비 보상(국가계약법 개정)	기재부	'25. 下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 리스크 분담 구조의 표준화
- 입찰 설명회 의무화(질의응답 공개 플랫폼 운영)
- 유찰원인 진단보고서(원인+개선안) 공개 의무화

- 입찰기간 연장
- 2단계 기술제안, ECI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적정 품질 확보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민간의 창의성 활용
및 기술경쟁력 강화

정부공사제도

추진실태 및 성과
지속적 모니터링

합리적 제도개선

Global Market과의
호환성 확보

기술형 입찰의 유찰 현상

단일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요인이 작용

입찰기준 강화 → 참여기피

- PQ·TP 심사기준 강화 → 기술점수 확보 난이도 상승 → 중소·중견기업 포기 → 입찰참가자수 급감 → 유찰률 상승 → 대형사들만 입찰가능 → 시장 과점 심화 → 심사기준 강화

물가·인건비 폭등 → 사업성 악화

- 리스크 회피 → 입찰기피 → 유찰률 상승 → 발주처가 예정가격 상향 조정 → 업체 신뢰 하락 → 다음 입찰도 기피

금융비용 폭등 → 수익성 악화

- 금리상승 → 금융비용 급증 → 예상 수익률 하락 (마이너스) → 입찰 포기 → 유찰률 상승
- 턴키는 공기 길고 선투입 자금 많음

유찰 → 예정가격 상향

- 유찰 → 재공고 시 예정가격 3~10% 상향 → 단기 참여 유인 → 근본적 원인 (물가·금리·심사기준)은 미해결 → 다음 입찰 때 또 유찰 → 균형력 약함

대형사 독과점 → 심사기준 강화

- 2~4개 대형사만 입찰 → 기술제안서 재활용, 유사성 논란 → “표준안” 대신 더 까다로운 심사기준 도입 → 중소기업체 참여 불가 → 유찰 지속

중장기 정책 및 성과 모니터링 필요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사업비 현실화

- 기획단계(기본구상-예비타당성조사-기본계획) 사업비 추정 기준단가 현실화
-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법령상 공사비 사전협의(market sounding) 의무화 및 단계적 확대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물가변동분의 반영 및 조정기준일을 명확화
- 공기단축 필요 사업은 입찰방법 심의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검토

- 설계보상비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실시설계저격자 선정시), 설계대가 산정 합리화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등의 사전 공개 및 의견조회 절차 마련하여 부당특약 방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관련서류에 명시 의무화, 공사기간 산정근거 양식(건진법 개정)
-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금지

입찰/계약 공정화

사업 효율화

- 기술형 입찰은 설계, 감리, 시공 모두 '통합발주' 원칙, 분리발주 허용은 예외적으로 명시
-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명시, 관련규제(추가협의/사유공표/조치계획/기관평가 등)에서 제외
- 유찰 예방 가능한 턴키Ⅱ(PDB) 방식의 도입 검토 및 시범사업 추진
- 총액계약+일부공종 단가계약 혼합하여, 물량변동 큰 공종은 내역입찰 요소를 가미한 턴키Ⅲ(Hybrid DB) 방식의 도입 검토 (해상공사/대형터널/지하철의 지반공사 등)

공사기간의 적정성 확보 방안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부고시)의 개정

공기단축이 필요하여 기술형 입찰 공사로 입찰공고하여 유찰된 경우 “공사기간의 적정성” 을 재검토 후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현행	개정안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⑧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u>공사비와</u> 입찰예정시기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⑧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u>공사비와 공사기간</u> , 입찰예정시기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1의2]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5. 기타 참고사항 : <u>노선개요</u> ,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1의2]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5. 기타 참고사항 : <u>노선개요</u> , <u>공사기간 산정근거</u> ,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공사기간의 적정성 확보 방안

기술형 입찰의 추정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독립조직의 공사기간 검증 절차 도입

- 기본계획 단계에서 Top-down식 공기 설정
- 발주청에서 기술형 입찰이라는 이유로 완료해야 하는 시점에 맞추어 공기 설정하는 관행 지속
- 발주청의 공기 검증 역량 부족 및 검증 프로세스 미비
- 지반, 해역 조건 등 불확실성 과소평가되는 등 위험요인의 체계적 분석 부족

- **일정규모(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독립된 공기 검증 절차를 공식화하여 운영 필요**
 - 이해관계자(발주청, 설계사, 시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조직이 공사기간의 객관적 검증

기술형 입찰 비용부담 경감

- 기술형 입찰비용에 대한 부담이 유찰 또는 담합 유인으로 작용
- 현재 공사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일정점수 이상 탈락자에 보상
- 설계보상비의 지원 확대 필요

❖ 캐나다의 Design-Build 설계보상비

* 모든 탈락자에 동일 비용 지급

예) 500억X0.5%X0.8 = 2억

* **Remuneration = estimate of construction cost x scope factor x cost factor**

DETAIL	0.4%	0.5%	0.6%
LOW	Minimum \$20,000	Minimum \$25,000	Minimum \$30,000
MEDIUM	0.3% Minimum \$15,000	0.4% Minimum \$20,000	0.5% Minimum \$25,000
HIGH	0.2% Minimum \$7,500	0.3% Minimum \$15,000	0.4% Minimum \$20,000
	COMPLEXITY LOW	COMPLEXITY MEDIUM	COMPLEXITY HIGH

Figure 1 – Scope Factor

ESTIMATED CONSTRUCTION COST	Cost Factor ¹
Up to \$25,000,000	1.0 to 0.9
\$25,000,000 to \$50,000,000	0.9 to 0.8
\$50,000,000 to \$100,000,000	0.8 to 0.7
\$100,000,000 to \$150,000,000	0.7 to 0.6
\$150,000,000 to \$200,000,000	0.6 to 0.5
\$200,000,000 to \$250,000,000	0.5 to 0.4

Note ¹ Cost Factor is a sliding scale within each estimate category

Figure 2 – Cost Factor

“일방에게 유리한 계약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다.”

eysin@kict.re.kr

www.kict.re.kr